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김용만 · 정진욱
진성준 · 이수진 · 허성무
어기구 · 곽상언 · 강준현
문금주 · 백승아 · 이주희
소병훈 · 손 술 · 오세희
박희승 · 박선원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다수의 법률은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·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,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·공포·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.

이와 관련하여,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한 바 있음.

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표현을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6호나목 중 “성적 수치심”을 “성적 불쾌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의2, 제3호의5, 제7호,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	6.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	나. ----- <u>성적 불쾌감</u> - -----

등의 행위	-----
다. ~ 마. (생 략)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7.·8. (생 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